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3종시설물 모바일 점검시스템 안내



제3종시설물 모바일 점검시스템  
<http://3rd.kalis.or.kr>

시스템 문의: 1588-8788

##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 제3종시설물이란 무엇인가요?

- 제1, 2종시설물 외에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시설물안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기관\*이 지정·고시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절차[지정기관]

지정절차	해제절차
지정 전 실태조사 결과 입력 ※ 실태조사 매뉴얼* 참고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위험도, 시설물의 경과년수 검토
제3종시설물 지정 및 시설물정보 입력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제3종시설물 지정통보 및 고시      제3종시설물 해제통보 및 해제고시

\* 실태조사 매뉴얼 : [FMS]-[이용안내]-[자료실]-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참고



### 제3종시설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3종시설물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시행령 별표1의 2)

1. 토목분야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마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구분	대상범위
가. 교량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교량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철도교량
나. 터널	1) 연장 300미터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지하차도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다. 육교	보도육교
라. 옹벽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
마. 그 밖의 시설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량·터널·옹벽·항만·댐·하천·상수도 등의 구조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과 이와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

2. 건축분야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다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구분	대상범위
가. 공동주택	1)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3)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나. 공동주택 외 건축물	1)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3)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4)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6)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다. 그 밖의 시설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 비고

1.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홍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된 거리를 말한다.
2. 터널 및 지하차도의 '연장'이란 각 본체 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함한 거리를 말한다.
3. 위 표 제1호라목2에서 '복합식 옹벽'이란 재료형식이 27기 이상인 옹벽을 말한다.
4. 위 표 제2호의 시설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5. 건축물의 '연면적'은 부대시설 및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하고,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계산하며, 위 표 제2호나목2부터 4)까지의 규정에서 연면적을 계산할 때 2개 이상의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같이 있는 경우 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로 계산한다.
6.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7. 위 표 제2호나목에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8.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모두 지정되나요?

- 모두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별표 제1외2에 따른 시설물 중 제1호 가목 1), 3), 나목 1), 2), 4)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3종으로 의무 지정·고시해야하고, 이외 시설물은 지정기관이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관 시설에 대하여 안전등급, 위험도, 시설물의 경과년도를 종합적으로 고려(실태조사)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3종으로 지정·고시합니다.
- ※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5조 참고

## 제3종시설물의 안전점검

### 제3종시설물은 어떤 점검을 수행하나요?

- 법 제1조 및 시행령 제8조, 별표3에서 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등급	A·B·C등급	D·E등급
정기안전점검	반기에 1회 이상	1년에 3회 이상

\* 해빙기 전(2·3월), 우기 전(5·6월), 동절기 전(11·12월)

- 단,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 또는 E에 해당할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해당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정기안전점검은 어떻게 수행하나요?

- 제3종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이하, 매뉴얼)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세부지침 안전점검·진단 편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 매뉴얼에서는 정기안전점검의 개요 및 실시 방법, 안전등급 평가기준, 표준 보고서 서식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정기안전점검은 누가 수행하나요?



1. 자체점검 •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관리주체의 소속 직원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가 직접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책임기술자라 합니다.

구분	기술자격 요건	교육요건
토목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자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건축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단,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점검가능한 기술자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 대행점검**
- 관리주체에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이 없는 경우 대행업체를 통해 점검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법 제26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안전진단전문기관 :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
  - \*\* 유지관리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유지관리업자

✓ 정기안전점검 결과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정기안전점검 결과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해 제출합니다. 자체점검의 경우 관리주체가 직접 점검 결과를 제출하고, 대행점검의 경우 점검을 수행한 대행업체가 점검 결과를 제출합니다.



✓ 정기안전점검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1. 중대한결함등이 발생한 경우**

- 중대한결함\*등이 발생한 경우 사용제한, 위험표지 설치 및 주민공지 등 조치를 취하고 2년 이내 보수·보강 등 조치착수, 착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FMS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중대한결함의 종류는 매뉴얼 부록2 참고

**2. D-E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 정기안전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 위험표지 설치 및 주민공지 등 조치를 취하고 FMS를 통해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타 보수·보강을 실시한 경우**

-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보강을 시행한 경우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FMS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종시설물 모바일 점검시스템**

✓ 제3종시설물 모바일 점검시스템이란?

- 제3종시설물 모바일 점검시스템(이하, 모바일 시스템)은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매뉴얼을 기반으로 구축된 모바일 형식의 시스템입니다.

✓ 모바일 시스템은 어떻게 접속하나요?

- 모바일 시스템은 아래의 URL을 통해 접속하실 수 있으며, FMS와 계정 정보가 연동되어 있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URL	https://3rd.kalis.or.kr	
ID/PW	FMS 계정과 동일	
사용자 유형	FMS와 동일(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 모바일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모바일 점검시스템은 계약정보를 등록하는 [점검관리], 점검 결과를 입력하는 [점검실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점검결과], 점검결과 기반의 [점검통계]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점검관리**
- 점검관리 단계에서는 관리주체가 직접 점검을 수행한 자체 점검과 대행기관이 점검을 수행한 대행점검을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후 해당 점검에 대한 책임/참여 기술자, 대상시설물 등의 계약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점검실시**
- 점검실시 단계에서는 점검 과업의 수행계획, 부재별 점검 결과, 시설물별 점검표 등을 입력하고 매뉴얼의 평가기준에 따라 안전등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점검결과**
- 점검결과 단계에서는 점검실시 단계에서 입력한 결과에 따라 매뉴얼의 표준 보고서 서식으로 결과보고서가 자동 생성되며, 자동 생성된 결과보고서를 FMS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점검통계**
- 점검통계 메뉴에서는 모바일 시스템에 입력된 정기안전점검 결과 Data를 기반으로 시설물별, 관리주체별 등 조건별 통계를 조회·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조건으로 통계를 생성할 수 있는 DB조건 검색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시스템은 어떤 점이 편리한가요?

- 휴대성**
- 모바일 시스템은 반응형 웹 형식으로 구축되어 웹&모바일 버전 동시 접속·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외·내업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현장 점검사진을 촬영·업로드 할 수 있고, FMS의 전자 점검 및 보수·보강 결과와 매뉴얼의 시설물별 평가기준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뢰성**
-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을 그대로 구현하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입력한 부재별 점검결과로 안전등급 평가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안전등급을 산정하고 표준 보고서 서식에 따른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생성할 수 있습니다.

- 편의성**
-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시 FMS와의 연계를 통해 시설물관리 대장, 전자 점검 및 보수·보강 결과 등을 자동으로 불러오며, 생성된 결과보고서를 FMS로 전송하여 자동으로 점검실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분	As-Is (FMS)	To-Be (모바일 시스템)
사전 조사	-	· FMS에 등록된 전자 점검, 보수·보강 Data 연계
현장 조사	· 외관조사 · 부재별 육안 점검	· 실시간 결함사진 업로드 · 시설물별 점검표 작성
조사결과 검토·분석	· 외관조사사진 정리 · 전자 점검과의 비교·검토	· 외관사진첩 자동 생성 · 안전등급 자동 산정
보고서 작성	· 결과표 작성 · 요약표 작성 · 안전등급 산정 · 결과보고서	· 표준 서식의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자동 생성
실적 보고	· 점검 계약 입력·승인 후 실적보고 입력·제출	· 모바일 시스템의 Data를 FMS로 연계 하여 자동 실적 제출

✓ 모바일 시스템의 업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모바일 시스템은 점검계약 등록부터 결과 입력 및 결과보고서 작성과 실적 제출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모바일 시스템의 업무 절차에 대한 단계별 상세 내용은 '제3종시설물 모바일 점검시스템 사용법 매뉴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우측의 QR코드 스캔 → 커뮤니티 → 공지사항으로 접속

